

어린이 보호표지 및 정지표시장치 (제19조제9항 · 제10항 관련)

1. 어린이 보호표지

가. 앞면부착용 표지



나. 뒷면부착용 표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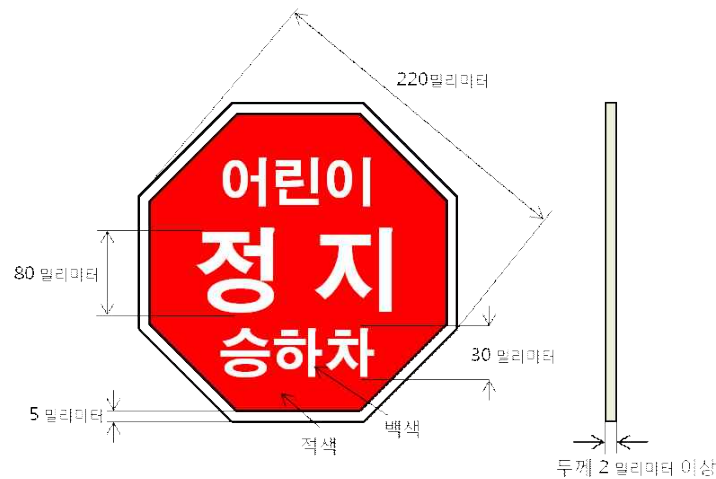
주)

1. 바탕은 청색,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.
2.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한다.
3. 글씨는 고딕체로 하고, 그 높이가 앞면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70밀리미터 이상, 뒷면 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8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, 그 간격은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.

2. 정지표시장치

가. 정지표시장치의 구조

- 1) 정지표시장치는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표시부와 이를 차체에 장착하는 지지부로 구성될 것
- 2) 지지부는 주행 중 정지표시장치가 차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되고, 예리한 돌출부분이나 모서리가 없는 구조일 것. 이 경우 외부 충격 시 정지표시장치의 지지부 일부가 접혀야 하고, 표시부는 교체를 위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3) 정지표시장치의 표시부는 양쪽면으로 이루어지며, 양쪽면의 규격은 다음과 같을 것



<표시부 규격>

주)

1. 바탕면은 적색,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으로 한다.
2. 각 모서리의 곡률은 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.
3.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한다.
4.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인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 표시부의 규격은 표시부 규격의 125퍼센트 또는 150퍼센트로 한다.

나. 정지표시장치의 표시부 작동기준

- 1)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차체와 수직인 방향으로 펼쳐질 것
- 2)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닫힐 때에는 자동으로 차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접힐 것

다. 정지표시장치 표시부 반사성능 기준

입사각(각도)	반사성능(cd/lux · m ²)			
	관측각(0.2°)		관측각(0.5°)	
	백색(글자)	적색(바탕면)	백색(글자)	적색(바탕면)
4D	250	30	95	10
30U	150	12	65	6